

# 납부금 반환 규정

학교 법인 나가누마 스쿨 도쿄 일본어 학교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 나가누마 스쿨 도쿄 일본어 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에서 학칙에 따라 학생이 납부하는 납부금의 처리 및 반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일본어 교육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 범위)

- 본 규정은 본교가 시행하는 문부과학성 인정 일본어 교육 과정에 입학할 희망하는 학생 및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
- 온라인 코스 및 개인 레슨 등 문부 과학성 인정 대상 외 과정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제 3 조 (납부금의 종류)

학생이 납부하는 납부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전형료
- 입학금
- 수업료
- 시설 이용료
- 교재비 등
- 기타, 본교가 별도로 정한 비용

## 제 4 조 (납부 방법 및 납부 시기)

- 납부금은 본교가 발행하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한까지 납부해야만 한다.
- 납부금은 수업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한다.
- 본교는 입학 시 1 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납부금을 일시불로 청구하지 않는다.

## 제 5 조 (입학 전의 입학 취소에 따른 반환)

- 입학 신청 후 첫 학기 시작 전까지의 기간에 입학할 취소를 한 경우, 납입금의 반환 여부 및 범위는 본 규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납입금 반환 규정 별표」 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6 조 (입학 후 퇴학에 따른 반환)

- 입학일 이후에 학생이 개인 사정으로 퇴학한 경우, 해당 퇴학 시점에 이미 시작된 학기에 해당하는 수업료, 시설비 및 교재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2. 퇴학 신청이 접수된 시점에서 아직 시작되지 않은 학기에 해당하는 수업료, 시설비 및 교재비 등의 반환 여부와 범위는 본 규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납부금 반환 규정 별표」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3. 본조(本條)에 따른 반환은 교장의 퇴학 허가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제 7 조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1. 학생이 학칙에 근거한 교육과정 변경을 허가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납부금과 변경 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납부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을 때의 징수 또는 반환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학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전조(前條)에 준하여 정산한다.

#### 제 8 조 (징계처분으로 인한 퇴학 또는 제적 시의 처리)

1. 학칙에 의거한 징계 처분으로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해당 퇴학 또는 제적 시점에 이미 시작된 학기에 해당하는 수업료, 시설 이용료 및 교재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전항의 경우에 학생이 퇴학할 경우 납부금의 처리는 제 6 조의 규정에 따른다.
2. 해당 퇴학 또는 제적 시점에 아직 시작되지 않은 학기에 해당하는 수업료, 시설 이용료 및 교재비 등의 반환 여부와 범위는 본 규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납입금 반환 규정 별표」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제 9 조 (불가항력 사유에 관한 처리 기준)

1. 감염병 유행, 천재지변 등 본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수업이 온라인 또는 대체 수단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납부금의 반환이나 감액은 하지 않는다.
2. 전항(前項)의 경우에 학생이 퇴학할 때의 납입금 처리는 제 6 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 10 조 (반환 방법 및 수수료)

1. 납입금 반환을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본 규정 제 5 조부터 제 8 조까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납입금 반환은 납부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전항(前項)의 반환에 따라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 해외 송금 수수료, 환전 수수료, 중계 은행 수수료 및 기타 반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전액 납부자가 부담한다.

#### 제 11 조 (규정의 언어)

본 규정은 일본어를 정본으로 하며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이 작성된 경우에도 해석은 모두 일본어 정본에 따른다.

---

부칙

본 규정은 「학교 법인 나가누마 스쿨 학납금 납부·반환 규정」 (2025년 7월 1일 개정) 으로 대체하여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납부금 반환 규정 별지

1. 입학 시 입학 취소 신청 시기와 납부금 반환 여부

납부금	납부 시기	입학 신청 후	입학 확정 후 (전형 합격+CoE 교부)	첫 학기 시작 후
전형료	신청 확정 후	반환 불가	반환 불가	반환 불가
입학금	입학 확정 시(전형합격+CoE 교부)	(미납부)	반환 가능	반환 불가
수업료	위와 같음	(미납부)	반환 가능	반환 불가
시설 이용료	위와 같음	(미납부)	반환 가능	반환 불가
재료비 등	위와 같음	(미납부)	반환 가능	반환 불가

2. 입학 후 중도퇴학, 교육과정 변경, 징계에 의한 퇴학 및 제적과 납부금 반환 여부

	납부 시기	학기 시작 전	학기 시작 후
전형료	신청 확정 시	반환 불가	반환 불가
입학금	입학 확정시(전형 합격+CoE 교부)	반환 불가	반환 불가
수업료	첫 번째는 위와 동일하게 이후에는 반년마다 학기 시작 2 주 전까지	반환 가능	반환 불가
시설 이용료	위와 같음	반환 가능	반환 불가
교재비 등	위와 같음	반환 가능	반환 불가